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을 개정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공고했다. 본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요약 게재토록 한다.

■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244호, 2010.4.12.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깔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검사 신뢰성 확보와 감시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관리를 제도화하며,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를 추가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종란에 대한 동물검역시행장 지정과 매추리 종란의 검역기간을 선정하며 검역물의 관리에 수송용기를 추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① 제2종 가축전염병 추가(안 제2조 개정)

(1)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

②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추가(안 제4조 개정)

(1)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③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관리 강화(안 제14조의2 개정)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역원장이 감시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전염병 확대(안 제23조 개정)

(1)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를 추가함

⑤ 가축 사체의 매몰기준 강화(안 별표 5 개정)

(1) 사체 매몰시 이중 비닐 등 분침투성 재료를 덮고 생석회 도포방법을 구체화하며,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매몰에 따른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2)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대규모 사체를 매몰할 경우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를

도포하고 매몰지 외부로의 침출수 유출여부 확인과 침수된 침출수를 뽑아낸 수 있도록 유공관 설치 등을 제도화 함

⑥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및 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제42조 개정)

(1) 동물검역시행장에 종란을 포함하고, 기타 검역시행장 지정시 별표 14의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⑦ 검역물의 관리비용 징수대상 확대(안 제43조 개정)

(1) 검역물의 사육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퇴비 이외에 수송용기의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⑧ 수입식육보관장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14의2 개정)

(1) 수입식육보관장 시설기준 기자재에 적외선 온도계, 이동검사대,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로 비치하고 검사대는 삭제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낭충봉아부패병'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⑦ 검역원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돼지인플루엔자'를 '돼지인플루엔자·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래피'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나목 중 '식육보관장'을 '식육축산물보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종란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검역시행장은 별표 14의2를 준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분뇨·퇴비 등 오물'을 '분뇨·퇴비, 수송용기 등'로 한다.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1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